

# 복리후생규정



## 부천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

제정 2017.12.29. 규정 제20호

개정 2019.01.28. 규정 제56호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임원 및 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 제 2 장 안전과 보건

**제3조(안전 및 보건관리)**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건강진단)**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료시설)**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외부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복리후생

**제6조(후생시설의 운영)**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휴게소, 구내식당 및 그 밖의 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7조(복리후생비 지급)**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정액급식비

- 2. 직급보조비
- 3. 명절휴가비

② 복리후생비 지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.

**제8조(맞춤형 복지제도)** 공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9조(피복지급)** 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1.28.>

**제10조(학자금 보조)** ① 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.

② 학자금 보조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따른다.

**제11조(직장 체육진흥)**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2조(체육행사 등)**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.

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시 취미클럽을 육성 발전토록 지원한다.

## 제 4 장 재해보상

**제13조(재해보상)**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다.

**제14조(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)**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「민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보상의 경감)**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

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.

**제16조(단체상해보험 가입)**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보장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2017.12.29. 규정 제20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2019.01.28. 규정 제5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